



ESCO사업 성과배분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엽서나 메일을 받습니다.

ESCO지가 독자 여러분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ESCO에 대한 각종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보하실 사항, 잡지를 읽어보신 소감 등을 적어보내 주십시오. 특히 ESCO협회의 홈페이지(www.esco.or.kr) 게시판 및 「공지사항」란을 이용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더욱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글은 편집상 일부 수정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7
문래에이스테크노타워 702호
ESCO 편집자 앞
TEL : (02)2679-6464
FAX : (02)2632-7566
w3master@energycenter.co.kr

Q. ESCO사업 성과배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예측된 에너지절감량이 금액으로 100만 원이고 실제 측정된 에너지절감량은 90만 원일 경우 비례적으로 감액을 적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A. 실제 에너지절감량이 예측된 절감량보다 적을 경우, 상환방법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ESCO사업은 투자비를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회수하는 방식이며, 성과배분 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일반적으로 에너지사용자는 매 월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 이내에서 투자비에 대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즉, ESCO사업 계약시 ESCO가 보증한 절감액이 100만 원/월(VAT제외), 매월 상환액을 절감액 이내인 95만 원/월(원리금상환액임, VAT제외)으로 정하여 성과배분계획서를 작성하였고, 해당사업 준공 이후에 측정된 절감액이 80만 원/월(VAT제외)이라고 가정한다면, 매월 상환액(95만 원/월)이 측정된 절감액(80만 원/월)보다 많으므로 이를 절감액 이내로 재조정(비례감액 또는 환수기간 조정)하여야 합니다. '갭'과 '올'의 합의에 의하여 재조정된 상환액이 월 75만 원이라고 한다면, 총 투자비에 비

해 상환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환기간은 최초 계약시보다 길어지게 되며, 이에 따른 금융이자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때, 증가하는 금융이자비용(이에 따른 부가세 포함)을 ESCO에서 부담하는 경우를 '비례감액'하는 것으로, 에너지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환수기간 조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측정된 절감량이 보증 절감량보다 적은 경우 해당 원인분석 실시 결과에 따라 계속방법의 변경, 하자 보수 또는 재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갭'과 '올'간의 합의하에 위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에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을 ESCO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자본금, 실적 등 ESCO자금 지원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해당사업에 대하여 정책자금(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을 받지 않는다면 어떠한 입찰의 방법이든지 귀 아파트에서 정하여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07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 대상으로 '소형 열병합발전시스템 ESCO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심사기준 표준(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5-156호)을 따르는 것에 한하도록 자금지원지침에 정하고 있으므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입찰공고와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낙찰자 결정 등 모든 절차를 적격심사기준 표준에 따라야 합니다.

즉, 위 적격심사 표준은 자본금, 실적 등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ESCO정책자금(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 전기설비 ESCO자금 융자의 조건이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라고 하는데 에너지절약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이 5년(60개월)이 넘으면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올해부터는 ESCO사업 전기설비의 경우 상환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금 추천(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사항은 없으며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검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1. 입찰에 참가한 ESCO중 ESCO협회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결산보고서가 아닌 재무재표로 제출 하였을 경우 평가 가능한지요?
2. 70W용량의 보안등용안정기내장형램프의 경우 표시치는 70W, 입력전력이 60.5W로 시험성적서에 명기되어 있을 때 ESCO사업으로 적합한 제품인지 검토하여 주십시오.

A. 1. ESCO사업 실적확인 은 전기공사업 실적증명서로 ESCO용역 실적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 예규 제17호”의 심사분야 중 “부채비율 및 매출액 순이익율”은 당해 입찰공고일로부터 소급한 최근 2년의 결산보고서 또는 ESCO협회에서 발급한 최근 2년간의 업체별

부채비율 및 매출액 순이익을 확인서”로 심사하여야 합니다. 재무재표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보안등용 안정기내장형램프의 자금지원기준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70W이상인 램프로써,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역률 0.9이상, 광효율 65lm/W이상, 실용성 가속평가 1만 5천 회 이상인 램프이어야 하며, 시험방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기술기준 중 ‘안정기내장형램프’의 경우에 준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해당 램프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램프의 전기용품안전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보내주시면 지원대상여부를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ESCO사업 분야 중 1종 공장 생산설비분야 일 경우(등록업체 LS산전, 주요투자분야 인버터) 저압 대용량 전동기에 적용할 ESCO설비의 인버터를 등록된 LS산전 제품으로만 가능한지? 또한 동일하게 수입제품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SCO업체의 1종, 2종 구분은 투자소재지에 따른 것이며 1종은 공장 생산설비, 2종은 건물 분야입니다. 문의하신 해당설비를 설치하는 투자소재지가 공장과 같은 산업체라면, 1종 또는 1종 및 2종으로 등록된 ESCO와 해당사업의 투자경제성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종 또는 1종 및 2종으로 등록된 ESCO의 현황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인버터는 2007년 자금지원세부내역 “101.주파수 변환식 회전수 제어장치(VVVF)”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금 지원은 특정 제조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되는 설비라면 외국 제조업체의 제품도 지원 대상입니다.